중재사례에 나타난 언론침해의 문제점

이혜복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 중재위원

당위원회는 언론중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국민 홍보를 위해 대구 · 춘천 · 대전에 이어 마산에서 지방토론회를 개최했다. 1988 년 11 월 4 일 마산 롯데크리스탈호텔에서 열린 경남지방토론회에서는 이혜복 위원의 「중재사례에 나타난 언론침해의 문제점」이린 주제발표가 있었고, 참석했던 지방언론계 · 학계 · 법조계 등 각계인사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주제논문과 토론을 초록한 것이다.
편집자 주

신문 · 방송을 포함한 언론매체가 국민에게 주는 영향력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흔히 언론을 사법 · 입법 · 행정의 삼권과 대칭될 수 있는 제 4 부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실, 언론이 지닌 막강한 힘은 국민의 판단은 물론 나라의 향방에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신중을 결한 보도로 인해 죄 없이 피해를 입은 예 또한 없지 않기 때문에 언론을 제 4 부의 권부로 보는 것은 언론에 대한 존경 내지 찬사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언론에 대한 두려움을 비판하는 측면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언론매체는 보도활동을 통해서 일반국민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의 가치의 경중의 제시, 정보의 일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된다. 어떤 것을 보도할 것이며 어떤 것을 보도하지 않을 것인가의 선택은 물론, 제목을 어떻게 붙일 것인지, 해설기사를 통해 뉴스의 배경을 좀더 깊게 파헤친다든가, 어느 기사를 톱(top)에 싣고 어느 기사는 제목을 더 크게하며 또 어떤 기사는 눈에 뜨이지 않게 일단정도로 작게 취급한다든가 하는 것이 모두 언론기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독자는 언론에 의해 리드당하게 마련이다.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론이 사회공기로서 신속, 정확, 공정, 진실한 사실보도에 충실할 경우 문제는 없겠으나 자칫 졸속, 편파, 부실한 보도를 함으로써 언론본래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로 인한 피해는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막심한 상황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자유민주사회에 있어서도 역시 「언론의 절대적 자유」란 있을 수 없고 그 사회의 틀에 맞도록 언론자유를 해치지 않는 법위안에서의 법적 규제는 불가피하다. 예컨대 외설죄,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협박죄 등 외에 특수매체인 방송에 관한 방송법이라든가, 미성년자보호를 위한 언론규제법규 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참고로 1975 년 미국 AP 통신사의 회원사편집책임자 600 여명으로 구성된 AP 펀집국장회(APME)의 윤리강령의 요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령에는 책임, 정확성, 정직성, 이해의 충돌 등 4 개 항목을 기술하고 있는데 특히 정확성에 대해 「신문은 강조 또는 생략에 의해 생기는 부정확, 부주의, 편향, 왜곡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문은 사실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눈에 띄는 형태로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문보도에 잘못이 있을 때는

즉각 정정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워싱턴 포스트지의 경우 1978 년 동사발행의 「Deskbook on Style」 말미에 수록된 윤리강령 전문을 보면 「워싱턴 포스트는 어떠한 특수이익도 두려워 하지 않고, 어떤 자를 두둔함도 없이 진리를 공격적, 책임있는, 공정한 방법으로 추구할 것을 서약한다. (중략) 기사속에는 비난 받고 도전받은 사람들로부터의 코멘트가 포함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에게 의견을 강요하려는 사람들의 동기는 일상적인 것으로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략) 소리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오만한 행위도 삼가며, 정중함과 성의로써 공중과 접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되어 있다. 구체적인 강령에서 특히 「기자의 역할」에 관해 「기자는 듣는 쪽에 머물러, 무대밖에 서서,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고, 「공정성」에 관해서 「어떤 기사도 커다란 중요성, 큰 의미가 있는 사실을 누락시켰을 경우는 공정치 못하다. 기본적으로는 관계없는 정보를 써넣어 뜻있는 사실을 훼손케 하는 것 같은 기사는 공정한 것이 아니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독자를 오도해서 속이는 것 같은 기사는 공정치 못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는 워싱턴 포스트지와 같이 보도에 착오가 있을 때 제 2 면에 눈에 띄게 정정을 내는 일관된 편집방침을 실천하고 있는 신문들도 있다.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란 등에 오보를 지적하는 독자의 편지를 실어서 정정대신으로 삼는 신문들도 미국에서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언론윤리를 확립하고 그럼으로써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윤리위원회 등 자율규제를 위한 기관이나 강령의 실천도 필요하나 언론사 자체의 자세, 기자 개개인의 언론인으로서의 윤리관 확립이 앞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더구나 언론의 성질상, 탈윤리적 언론상황을 일일이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자율적인 규제가 바람직하지만 자율적인 규제에만 기대할 수 없을 때 언론에 의해 침해를 당한 개인의 경우나, 또 침해자로 지목된 언론사의 경우나,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그 이전 단계에서 중재제도에 의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언론중재제도라는 전치제도가 필요한 것이며, 이와 같은 중재제도가 일찍이 신문평의회 등의 형태로 외국에서 발전돼 온 연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로 언론침해를 받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그렇게 함으로써 언론의 사명인 「진실과 공정」을 기하는데 적극 기여할 수 있다고 볼 때 언론중재제도의 존치 사실을 널리 일반에게 주지시켜 이를 활용토록 하는 것이 진정한 언론창달을 위해서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중재위원회의 중재사례들을 살펴보면 졸속보도, 흥미위주의 과장보도, 허위보도 등으로 인해 언론의 침해를 받는 측의 고통이 얼마나 막대한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언론기관에 대해 이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언론사 자신의 과오를 시정하는 자세이기 보다는 이의 시정을 천연시키는 경향이 우리 언론사들의 거의 비슷한 실상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고 법에 호소하기 이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함으로써 문제가 겨우 해결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일부 언론의 숨김없는 실태라는 점에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침해의 구제와 아울러 진정한 언론의 창달을 위해서 중재위원회는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 보성전문 상과
□ 서울신문 사회부장, 동아일보 편집부국장, KBS 해설주간, 동 연수원장 역임
□ 현재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